

※ 교육공무원 승진규정(대통령령 제26833호, 2015.12.31.)

부칙 제3조(연수성적평정에 있어서 직무연수성적의 평정대상에 관한 경과조치)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부터 **2025학년도에 대한 평정까지** 연수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32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"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"을 "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"으로 본다.

가. 자격연수 성적 평정

1) 평정대상 자격연수 성적(승진규정 제32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2조제1항)

-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:

1급 정교사, 전문상담(교도)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 중 하나

- 교감 승진후보자 : 교감 자격연수 성적

-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: 교감 자격연수 성적

- 교장 승진후보자 : 교장 자격연수 성적

- 장학(교육연구)관 승진후보자(장학사 · 교육연구사) :

당해 직위 또는 교원의 직위에서 받은 자격연수 중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 성적

※ 1급 정교사 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대상자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을 교육성적평정대상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하도록 함(단, 본인이 선택한 과목 계열로 교감 면접대상순위명부 작성됨)(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과-1600(2011.06.07., 경기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-11577(2011.06.13.)호.)

2) 자격연수성적 평정점 = 9점-(연수성적만점-연수성적)×0.05

(단,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명부작성을 위한 자격연수성적 평정점 = 9점-(연수성적만점-연수성적)×0.025),
(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 2012.2.9.)

- 유의사항 : 교육성적이 각각 만점의 8할 미만(교육성적이 없는 경우 포함)인 경우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평정하되,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함
-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또는 석사학위취득실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B학점 미만 D학점 이상 성적은 만점의 80%로 평정함

※ 자격연수 성적 평정 시 유의사항

-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또는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실적으로 1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외에는 학위취득실적을 자격연수성적으로 인정하여 평정할 수 없음
-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 둘 이상일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함
- 연수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을 때에는 다음 성적으로 평정한다.
 - 최상위 등급의 평어 : 만점의 90%
 - 차상위 등급의 평어 : 만점의 85%
 - 제3등급 이하의 평어 : 만점의 80%
- 당해 직위 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<별표 1>에 의하여 '가' 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 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 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.